

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3. 10. 22 .

제 출 자 유철식의원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특정의 주제 및 관심분야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·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(안 제2조)
-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(안 제3조)
-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(안 제5조)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(안 제6조)
 1.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
 2.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
 3.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
 4.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
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성남시의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(안 제7조)

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특정의 주제 및 관심분야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·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연구단체 등록 등) ①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.

③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회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등록된 연구단체로부터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.

제5조(심의)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
4.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7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성남시의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연구주체 및 연구활동비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구활동비의 집행 등) ①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.

②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연구활동비를 지급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연구활동보고서 제출) ①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주제 승인통지 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종료 전까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"의원연구사례집"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11조(세부시행사항 등)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제 1 호 서식〉

의 원 연 구 단 체 등 록 신 청 서

년 월 일

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.

1. 단 체 명 :
2. 대 표 자 :
3. 설립목적 :
4. 구성인원 :

성 명	소속상임위원회	서 명	비 고

신청인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성남시의회의장 귀하

〈제 2 호 서식〉

연구단체 의원 변동 신고서

년 월 일

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의 원	
변 동 의 원	당 초	의 원
	변 경	의 원
변 동 일 자		
변 동 사 유		
기 타		

신청인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성남시의회의장 귀하

〈제 3 호 서식〉

연구 활동 계획서

년 월 일

본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대 표 자			
연구 내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		별첨	
연구 활동비	총 액		
	산출내역	구체적으로 기재할 것	
기 타			

제청인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성남시의회의장 귀하

〈제 4 호 서식〉

연구 활동 계획 심사 결과 통 지 서

년 월 일

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귀 연구단체의 년도
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사·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
연 구 주 제		
연구활동비	지 급 액	원
지 급	지급방법	
기 타		

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(인)

성남시의회의장 귀하